

3.근보증한도액

금 한시보증금 원

가. 국 법화 금

나. “가”목의 금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할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합니다.

4.근보증 결산기

누리펀드대부는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보증인은 자매지정형 .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20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 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eh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제1항 제2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조기금
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제 2 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기업자금의 경우 할인어음의 환매청구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누리펀드대부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다른 담보 · 보증약정과 의 관계

-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누리펀드대부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